

#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진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4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월 13일  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상훈·송도호·이승미  
김제리·이정인·문병훈  
김호평·김정태·채인묵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 체계가 없는 실정임. 이에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,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안전운행체계를 개선하고자 함.
- 또한,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,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법제화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전운행체계를 신설함(안 제14조제2항).
- 나.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,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.

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,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	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,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②와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,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⑤ (현행 ③과 같음)
④ (생략)	⑥ (현행 ④와 같음)